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4호 2021. 11. 25.(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3호)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64호)

규 칙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9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3호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특화 산업의 개발과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제5호 중 “완료사업”을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 완료사업”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추진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사업체에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15명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고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
- 사업 완료 후 구축된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각 사업의 중간조직이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활력플러스 사업 범위 조정(제3조)

-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에 따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를 곤충에서 산업전반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함

나. 추진단의 업무 조정(제8조)

-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및 희망키움 마켓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운영 등 사업 완료 후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추진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조직의 통합 운영 가능(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중간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의 추진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함

라. 신활력플러스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유무형 자산을 추진단이 관리 후 보조사업자에 양도(제9조)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단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후 보조사업자에 양도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감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 증원(10명→15명)(제14조)

-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위원의 인원을 증원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64호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6.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10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도요금”을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하천수”를 “지하수, 하천수”로, “제3조제1항 제2호”를 “제8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1항 제3호”를 “제8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을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times$ (3/100) $\times$ (체납 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산금 산출기준을 요금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TOC,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TOC,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TOC)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공사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군 읍·면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검사일자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개정이유

- 「하수도법」(법률 제17852호), 「물환경보전법」(법률 제18030호)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423호) 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
-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제2019-141호, 2019. 4. 29.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제2조)

-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나.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후 신고사항 추가(제8조)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구조 변경,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외 사용,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및 별도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 변경(제10조)

- 하수처리구역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11조)

마. 원인자부담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제11조의2)

바.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조문 수정(제12조)

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관련 법 변경(제13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아.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인용 조문 변경(제15조)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조문 수정(제19조)

- 감면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추가
- 2개 이상의 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이 큰 하나만 적용

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한을 60일 이내로 신설(제20조)

카.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제21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

타.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제21조의2)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 3년
- 그 외 징수금, 과오납금 : 5년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99호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천재지변: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감면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 복구 시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가구원이 장애인인 자: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감면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로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해당업종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 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오납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후 변경)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5.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5일	
신청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전화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독 축 장				
주 소				
성 명				
연도 구분	납 기	. . .	하수량	m ³
체 납 액				
구 분	납기내금액	연 체 금	계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일 련 번 호	납부자			기분		과오납액			발 생 사 유	충당		환불				결재		
	수용가 번호	주소	성명	년도	월	사용료	기타	계		정 리 일 자	충당액	창구일	환불일	환불액	수령인	담당자	팀장	소장

【별지 제11호서식】

증제 호									
과 오 납 금 충 당 결 의 서									
공기업출납원		(인)	발 의			년 월 일	(인)		
소 장		(인)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인)		
팀 장		(인)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취 급 자		(인)	충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인)	통 지 번 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구 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과 오 납 액	사용료								
	계								
	과오납합계①					충당후잔액 ①-②			
구 분		세입년도	세입과목			과오납 총 액	과오납 년월일	과오납자	
			관	항	목			주소	성명
충 당 내 액	사용료								
	계								
	충당금액 ②					충당후미수납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부)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불이자		
						일 수	금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 잔액 (환불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참고 : 1.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량	생활하수	m³/일		사업장폐수	m³/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m²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³/H
		양수능력	m³/일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m³ 특 기 사 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별지 제14호서식】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3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상 태 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한 즉 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격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³/H	
	양수능력	m³/H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사용기간	일 간	m³	월 간	m³	
	사 용 량	m³/H				
	비 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처리기한
즉 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감 수 량	제품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 함유량(m³) (비율%)	물 사용량 (m³)	기타 감수량 (m³)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m³)	감수량(m³)	하수배출량(m³)	사 용 기 간			
				20 . . 20 .(일간)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제4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7호서식】

◇개정이유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규정 및 별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체금 및 독촉장 발부에 대한 규정 정비(제9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미납부 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 발부
-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 및 독촉장 동시 발부
-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서식에 따름

나. 감면사항,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대한 규정 정비(제10조)

-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기준 설정

다.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에 대한 규정 정비(제11조)

-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 후 다른 미납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입자에게 환불
-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납부자에게 과오납금 지급(충당) 통지서로 통지하고 이자 가산하여 반환
-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

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 서식 규정(제13조)

-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별지 제13호서식)
-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별지 제14호서식)
-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15호서식)
-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16호서식)
-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별지 제17호서식)

